

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5년 11월 5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시간 (분)	월교습비 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	고등정규수학1	36	2352	500,000	4주		0
보습	고등정규수학2	36	1920	400,000	4주		0
보습	고등정규수학3	36	480	100,000	4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5년 11월 5일

(☒)학원설립·운영자[(☐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²(재활용품)]